2025년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JOEN ACHIM NURSING HOME
좋은아침 요양원

제 95조【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이용계약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입소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3. 계약 만료 및 재계약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갱신 시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비급여비용 변동 시에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안내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입소이용료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등급별 입소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비급여(식재료비,상급침실료 등)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 등을 통하여 명시한다.
   ② 기타비용-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③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와 입소자 및 신원 인수인 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②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연락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④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나.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협조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

라.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 할 수 있다.
   ①「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③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④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 96조【계약의 해제】

1. 입소자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자유롭게 퇴소의 결정이 가능하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②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의 안전과 인권에 지장을 줄 때
③ 이용료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서비스제공자는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 97조【이용료 등 비용변경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노인 장기 요양보험 비대상자(등급외)로 입소하였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료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②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③ 미납 통보에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이용료 납부에 대한 최고하고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3. 이용료 변경시 안내절차

이용료 변경시 안내절차		
급여비용	수가의변경	전체공지, 개별 문자 안내 및 서명
	본인부담금의 변경	
	등급의 변경(유효기간 만료 등)	
비급여	식대비 변경	

4. 이용료 납부방법
① 입소자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5일 납부하기로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 입소자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으)로 한다.
④ 입소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제 9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계약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과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예방에 힘쓴다.
3. 입소자의 무료감을 감소시키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입소자의 정서적 신체적 상황을 배려한 그룹별로 주 2회 이상 제공한다.
4.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시설 이용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 확인 및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7. 입소자에게 주기적으로 신체청결서비스(목욕)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외 식사제공과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한다.
7. 입소자의 감염병 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해 월 2회 이상 계약의사를 두어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8. 기타 요양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공되는 서비스(개별물품 관리 등) 이, 미용 등 입소자(신원인수인)의 요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비용은 입소자(신원인수인)가 부담한다.

제 99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라.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특별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특별침실 사용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정한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동의를 얻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 10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계약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시설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수 있다

5. 감염자 또는 감염위험자에 대한 사항

감염자 또는 감염위험자의 경우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감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 격리하며,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6. 수급자의 사망에 대한 사항

수급자의 자연사망의 경우 특별침실로 격리하여 보호자와 장례절차를 상담한다.

7.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 악화에 대한 사항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 악화의 경우 보호자와 상담하여 인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경우 병원입원 여부를 결정하고, 임종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임종돌봄을 제공한다.

<2025년 수가 및 비급여항목 안내>

2025년 장기요양급여내역 및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원)

등급	구분	1일수가	본인 부담금	일반 식대비 *1식 4,500 간식 1,000	월 부담금액 (본인부담금+ 일반식대비)	경관식 식대비 *1식 3,500원	월 부담금액 (본인부담금+ 경관식식대비)
1등급	일반(20%)	90,450	18,090	435,000	977,700	315,000	857,700
	감경(12%)		10,854		760,620		640,620
	감경(8%)		7,236		652,080		532,080
2등급	일반(20%)	83,910	16,782		938,460		818,460
	감경(12%)		10,069		737,070		617,070
	감경(8%)		6,713		636,390		516,390
3~5 등급	일반(20%)	79,240	15,848		910,440		790,440
	감경(12%)		9,510		720,300		600,300
	감경(8%)		6,340		625,200		505,200

▶ 의료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계약의사 진료비, 개인 약제비, 개인의료비, 가정간호 의료비)

▶ 상급침실료는 별도 (1일기준-1인실 30,000원 2인실 6,000원)

▶ 국민기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액무료

▶ 국민기초 생계급여 수급권자 식대비 무료

▶ 국민기초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무료